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54
----------	-----

제출연월일 : 2009. 11. 2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변화된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사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조정하고 전국체육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사무에서 삭제함(안 제9조 및 제10조).

나. 복지여성국에 식품안전 및 세계조리사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다.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평생교육문화센터 분원으로 기구를 설치함(안 제4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9. 10. 16. ~ 10. 26.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 중 “청사관리 및 청사문화공간”을 “청사관리”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립예술단 운영 및 청사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11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9. 세계조리사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4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와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둔다”를 “,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는 대전광역시 동구 오리울로 32(대성동)에 둔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12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3일
3. 상 정 일 자 :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 12. 17)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김기황)

1. 제안이유

변화된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사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조정하고 전국체육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국 사무에서 삭제함(안 제9조 및 제10조).

나. 복지여성국에 식품안전 및 세계조리사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다.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평생교육문화센터 분원으로 기구를 설치함(안 제45조).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임명)

○ 본 개정 조례 안은

행정력 강화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청사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무를 자치행정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하고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의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분리하여 식품안전과를 신설하며, 세계조리사대회 지원을 위한 세계조리사대회 지원단 신설과 금년 11월 준공된 대전광역시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청사문화공간 이용 사무의 경우 지난 7월 자치행정국 내에 신설되어 5개월 만에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되는 사안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